

기획특집

제주지역에의 기업이전 성과와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승 철

1. 서 언

지역경제의 문제는 지역산업과 통하고, 지역 산업의 문제는 지역 내 기업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며,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육성에 주력해왔다.

특히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지닌 자원과 외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내생적(endogenous)인 발전전략¹⁾과 외생적(exogenous)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돕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산업을 비롯하여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외생적인 수단의 하나로 투자유치 내지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제주지역에 국내기업이 이전해온 현황은 2004년부터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노력이 펼쳐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대표적으로 IT기업 다음(Daum), NXC 등은 제주에 이전한 이후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IT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1) 로우머(P. Romer)가 처음 제시한 내생적 경제성장은 경제체계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체제내의 내생적 결과물이라고 강조한다. 외생적인 수단의 대표적인 것은 투자유치 또는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조세기반 강화, 지역자산의 가치 증식, 지역경제의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낙후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강병주(1997), 권선주(1997) 등 선행연구들은 기업유치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가 1차산업과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외부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구조 재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민들은 기업유치가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기업유치에 대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유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자사에 유리한가, 행정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주는가 등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진 후에 최종적으로 이전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글은 기업이전 정책 및 제주에 이전한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이들 기업이 제주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사례들을 모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이전 정책 및 제주지역 이전기업 현황

1) 정부 및 타시도 기업이전 정책

정부에서는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발전 억제에 위하여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지역인력의 고용창출, 인구 분산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로 인한 지방분권의 기틀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정주용·조광래, 2009).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 환경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정책의 수단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2008년까지는 기업유치를 지역발전의 핵심수

단으로 삼아 지역 내 이전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유치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지만²⁾, 2009년부터 수도권규제완화 및 정부보조금 축소 등 정부의 정책 의지가 후퇴된 이후에는 관심이 종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지역발전 정책을 펴는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 기업유치와 창업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의 명운을 거는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유치와 창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유치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경상북도는 LG 디스플레이 등 기업유치를 위한 MOU를 14회나 체결하였고, 기업과 사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현장지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2012년 한해만도 외국투자 기업 18개와 LG 등 19개 기업을 유치하였다. 전라북도는 2003년 도레이와 솔베이, 삼양파인테크 등 55개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세종시도 광역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75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기간을 61일에서 최소 14일로 단축, 주2회 기업인과의 대화의 날 운영,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시행 등 기업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표〉 시도별 지방투자기업 특별지원제도 현황

시도	지 원 제 도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 지원기준 국비 지원 : 최고 120억원(국비 60, 지방비 60) 지방비 지원 : 상시고용인원 20명 ~ 200명 이상(최소 10억 ~ 60억원 지원) •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국내·외 투자금액이 7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함.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규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음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음. • 산업시설용지 지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음.

2)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지역별 보조금 지급기준과 지원내용이 차별화되면서 2006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시도	지 원 제 도
전라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로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대규모 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이 되는 기업으로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중 공장 생산기반시설 보조금은 입주계약일(공장설립승인일) 또는 토지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내에 신청할 경우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생산시설 투자비용의 100분의 30 범위, 기업당 총 30억원(단, 개별입지는 기업당 총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중 현금 지원은 도내로 이주 후 1년이상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 최대 1년까지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의 근로자 정착금은 협력업체별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전라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 결정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함.
경상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익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으로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경상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외 기업의 본점 도내 이전 지원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충청 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운영비 등 지원 국내·외 기업이 신설·증설·이전 투자로 인한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오펀수 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3억원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범위에서 최고 15억원

시도	지 원 제 도
<p>충청남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비 보조금 부담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일반지역의 경우 각각 50%로 하고, 낙후·신발전 지역의 경우 각각 70%와 30%로 한다. 국비가 보조되지 않는 경우 가. 도비 : 시장·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50% 나. 시·군비 : 시장·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50%
<p>광주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보조금의 지원 컨설팅에 실제 소요된 비용 범위에서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 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컨설팅 실시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함.
<p>대구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시설용지 등의 지원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가 개발한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등 저가로 분양할 수 있음.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이 시 이외의 자가 개발한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그 분양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 타당성조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
<p>대전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지 지원 - 유치기업이 공장시설을 산업단지 안에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음.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기업,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성장산업기업, 위 항에 준하는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함.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이 1년 이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사업비 지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사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p>울산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등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세부적인 지원규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단 입지지원, 시설보조금지원 등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사업착수일로부터 5개년 이내의 투자로 함.
<p>부산광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서비스업 지원 시장은 기술력 향상과 고용증진 효과가 큰 생산자서비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임차료, 건물임차료상당액 또는 시설·장비 설치비 중 일부를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생산자서비스업보조금을 지원하면 7년 이내 시역 외 이전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기업의 1년분 건물 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상당액의 100분의 50범위(지원한도 : 2억원), 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범위(지원한도 : 3억원)이며, 기업의 건물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시도	지 원 제 도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제주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컨설팅 비용지원 -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투자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지원 -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설투자사업을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내부자료 재작성

2) 제주지역 이전기업 현황

정부의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이와 연계된 제주도의 기업유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제주지역에도 이전하는 기업이 집계되기 시작하였는데, 첫 사례는 인터넷 미디어기업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4년에 이전한 것이다.

2013년말 현재 제주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수는 총 52개로 집계됐으며, 2014년을 포함하면 연구소 포함 60개 가까운 기업들이 제주로 이사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2〉 제주지역으로의 이전기업 현황(2013년말 현재)

구 분	투자기업	주요 이전기업	
		운영 중	착공 및 건축 중
계	52개 기업		
수도권기업 이전	37개 기업	(주)제주반도체, 보타메디, NXC, 한국BMI, 다음, PNI시스템, 아인스S&C, 온코퍼레이션, 유씨엘, 이스프소프트 등	우성진공, 모뉴엘, BK바이오, 휴림, 김정문알로에, 선광LTI, 콧데, 바이오스펙트럼 등
콜센터	7개 기업		
연수원	8개 기업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내부자료를 연구자가 재작성

주요 이전기업으로는 DAUM을 비롯하여 (주)제주반도체, 보타메디, NXC, 한국BMI, 다음, PNI시스템, 아인스S&C, 온코퍼레이션, 유씨엘, 이스프소프트 등은 운영 중이며, 우성진공, 모뉴엘, BK바이오, 휴림, 김정문알로에, 선광LTI, 콧데, 바이오스펙트럼 등은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추가적으로 제주이전 콜센터 현황을 보면 〈표-3〉과 같다.

〈표〉 제주이전 콜센터 현황

기업명	업종
(주)다음서비스	인터넷 검색
(주)JMC	콜센터
(주)넥슨네트웍스	게임유통 및 서비스
TM파워(주)	인터넷 회선
동부화재직영콜센터	자동차보험 상담
(주)KT모바일고객지원센터	콜센터
제주스마일콜	여행, 특산품 판매

3. 이전기업의 파급효과 분석 사례

1) DAUM의 제주이전 파급효과

제주발전연구원(2014)은 DAUM이 제주에 이전한 이후 제주지역에 미친 파급효과가 얼마인지를 분석하였다. 일단 가시적인 효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DAUM 제주 이전 이후 제주가 IT거점으로의 변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DAUM 본사가 제주에 이전하는 것을 보고, 넥슨의 지주회사 NXC, 알집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 등이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3〉 참조). 2014년 3월말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서비스 제주근무자는 각각 416명과 449명으로 제주지역 DAUM의 총 고용자수는 865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제주도민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38명과 다음서비스에 449명의 95%인 427명을 합쳐 모두 465명이 채용되어 양질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DAUM 기업의 직원수 변화 추이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원(명)	653	618	587	681	831	921	1,123	1,307	1,402	1,539

DAUM 이전이 제주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DAUM 기업이 이전한 이후 제주지역에서 쓰인 것으로 집계된 지출액은 1,566억원(소비지출액 717억, 영업활동비 지출액 506억원, 건설투자비 343억원)으로 추산되었고, 이

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89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42억원, 고용유발효과 2,705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5〉 DAUM 기업이 제주이전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구 분	생산유발효과(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고용유발효과(명)
소 비 지 출	87,607	49,576	1,553
영 업 활 동 비	61,370	36,609	749
건 설 투 자 비	40,077	18,061	403
합 계	189,054	104,246	2,705

2) 제주 이전기업 파급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2012)은 제주이전 기업 중에 손익계산서가 확보된 8개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제주에 이전 후 손익계산서가 명확히 나올 수 있는 이전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첫째, 임금 소비지출(급여의 50%를 지출한 시나리오 1)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06억원, 부가가치유발 234억원, 고용유발 608명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영업비용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68억원, 부가가치유발 248억원, 고용유발 364명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건설비용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663억원, 부가가치유발 331억원, 고용유발 896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제주 이전기업 8개사가 2011년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비지출	시나리오 1	406억원	234억원	608명
	시나리오 2	571억원	324억원	848명
영업활동		368억원	248억원	364명
건설		663억원	331억원	896명
전체	시나리오 1	1,437억원	813억원	1,868명
	시나리오 2	1,602억원	903억원	2,108명
기업 1개사 당	시나리오 1	179억원	102억원	233명
	시나리오 2	200억원	113억원	263명

※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 파급효과 분석결과 중 시나리오 1은 급여의 50%를 소비지출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이고, 시나리오 2는 급여의 70%를 소비지출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 것임

종합적으로 기업유치에 따라 분석대상 8개사가 2011년까지 직원임금 소비지출, 영업비용지출, 건설투자 증대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시나리오 1)는 총생산유발효과 1,43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2억원, 고용유발효과 1,868명으로 분석되었다³⁾.

이를 기업 1개사당 평균 지역경제 파급효과(시나리오 1)로 계산하면 생산유발효과 1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억원, 고용 2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DAUM이 제주이전 후 10년 동안 제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는 1,8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4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연평균 1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 것으로 향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매출구조를 유지만하더라도 매년 수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즉 매출구조가 분명한 기업 하나가 지역에 유치될 경우, 눈 위를 굴러갈수록 눈덩이가 커지는 ‘스노우 볼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을 제주로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서야 한다.

4.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마무리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유치 활동이 중요하고, 이것보다도 더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제주발전연구원(2012)이 제주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결정 및 제주의 기업환경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을 이전할 때 의료, 문화, 쇼핑, 교통 등 인프라 부족을 가장 많이 고민했고, 제주이전을 결정하게 된 중요 이유로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꼽

3) 시나리오 2의 경우, 총생산유발효과 1,60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03억원, 고용유발효과 2,108명으로 분석된다.

고 있었다. 둘째, 제주 입지여건 만족도에서 인력수급, 원료조달, 대중교통환경, 물류환경 등의 순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급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정상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은 고용비용 지원, 물류시설유통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 정책자금 용도제한 완화, 환경관련 규제 완화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직원만족도 질문에서는, 타 지역 왕래에 따른 항공료 부담 및 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장건설이나 사업장 확장 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규제 완화, 입지관련 제도 완화, 생산인프라 확대, 계획단지이전 보조금 지원, 벤처집적시설·아파트형 공장 구축 운영 및 업종별 특화단지 조성 등 행정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이전기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전기업의 활성화 측면

‘기업하기 좋은 제주’가 되기 위해 제주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행정절차 및 규제완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기업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중개기능 강화, 기술 및 연구개발지원 및 자금 조달 지원, 직원 교육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안 네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대학과 기업체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취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선진국형 도제(徒弟)제도⁴⁾의 본격 도입이 요구된다. 대학과 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임원진이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기업에 지원되는 교육훈련비를 활용하여 지역 내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및 졸업 후 채용 등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은 지역 내 대학-당국자간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이전기업마다 종업원, 자본, 핵심 업무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안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로사항 청취 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섬이라는

4) 독일의 히든챔피언 밀레는 매년 500명의 도제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끝내면 상당수를 정식 근로자로 채용한다. 도제들은 1주일 중 절반은 학생들과 같이 학교에서 수업하고, 절반은 밀레 공장에서 현장 학습을 한다. 학교와 기업이 연계되고 취업이 선순환되는 구조다.

특성상 물류비가 과다하게 드는 물류환경을 극복하고, 소비처에 떨어진 기업의 마케팅 측면을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넷째는 이전기업들이 R&D사업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업유치 활성화 측면

제주지역에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유치 전략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기업유치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천적인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한다. 유치활동기간 설정, 기업물색, 기업접촉, 기업유치활동 등 과정보별 매뉴얼 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局) 단위 기업유치 활동 전개도 필요하다. 둘째, 제주지역 전략·선도·특화 업종 기업 유치 타깃을 맞출 필요가 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를 재개정하여 현재 전략·선도·특화 업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제주지역에 적합한 업종 및 전략·선도·특화업종⁵⁾ 기업체를 탐색하여 유치 전개가 필요하다. 셋째, 제주 이전 기업들에 한해 차별화된 지원이 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산업육성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R&D 중앙정부 보조 확대 등을 담아 제주이전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이전 기업 자회사의 경우 이전기업 토지 및 건물 내 입주 허용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 이전기업들에게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특히 수도권과 지근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산업단지의 조기 확대 조성과 더불어 다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유통기능까지 겸비한 복합적 혁신공간으로 산업입지 수급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기업이 한꺼번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것은 위험(risk)이 매우 커서 단계적 이전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아파트형공장(벤처공장, R&D연구소,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

5) 전략산업 업종 : 바이오산업(건강뷰티생물산업), IT산업(디지털콘텐츠), 선도산업 : 제주형 동력서비스, 청정 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산업, 특화업종 :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초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 마무리

일부의 주장처럼 그동안 제주 이전기업들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에서도 기업유치 정책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여론도 없지 않지만 제주지역에 기업유치 실적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앞서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전과 투자유치는 구분 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유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매출구조가 분명한 기업 하나가 지역에 유치될 경우, 눈 위를 굴러갈수록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snow ball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제주발전연구원(2012), 제주 이전기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 제주발전연구원(2014), DAUM 제주이전 10년과 경제적 파급효과.
- 조광래(2011),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